

「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」 신규참여자 추가모집 공고(3차)

경상북도 및 시·군과 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06. 02.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☐ 접수 방법

- 이메일 접수(gepa02@gepa.kr)

☐ 문의

-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: 청년정주지원센터(청년경제지원팀)
☎ 054-995-9946, 476-5367 (E-mail) gepa02@gepa.kr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(고객의소리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☐ 선정결과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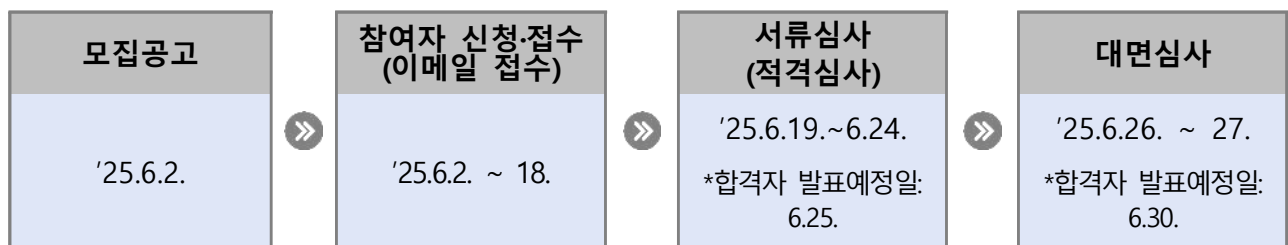
-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 공고 또는 개별통지

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	: 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
○ 사 업 내 용	: 공고문 내용 참조
○ 지 원 규 모	: 15명
○ 사 업 기 간	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.12.31.까지
○ 지 원 금 액	: 연간 1인당 20,000,000원(최대 2년) * 팀당 최대 2인 가능(연간 4,000만원)
○ 신 청 방 식	: 이메일 신청
○ 선 정 방 법	: 서면심사(자격심사), 대면심사(발표평가)

○ 신 청 기 간	: 2025.06.02.(월) ~ 06.18.(수) 17:00까지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사업목적

- ☐ 경북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북 도내 창업 및 지역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
- 지역사회 문제해결, 지역자원 활용 등 창의적인 아이템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, 교육·멘토링, 청년 간 네트워킹 등 지원

4. 주요 공지사항

☐ (협약기간) 참여자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
* 상기 협약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☐ (지원기간) 최대 2년간 지원하며, 2차년도는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 확정

☐ (모집인원) 총 15명(8개 시·군)

- 시·군별 모집인원(※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)

시·군	모집인원(명)	시·군	모집인원(명)
경주시	1	문경시	1
안동시	1	영양군	2
구미시	2	영덕군	1
영천시	5	청도군	2
합계			15

☐ (지원금액) 연간 1인 기준 20,000,000원

- 1년차: 사업화자금, 정착활동비 지원

* 정착활동비의 경우 1인 최대 500만원(월 60만원 한도) 지급

- 2년차: 사업화자금(1년차 평가 후 20,000,000원 추가 지원)

☐ (선정공고) 각 심사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 공고 또는 개별통지

5. 신청자격

☐ (자격)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,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, 협약 전(일부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)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
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('1985.01.02. ~ '2006.01.01.)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※ 2025.01.01. 기준

-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*를 두어야 함

*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

-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써 참여 가능

② 개인 또는 팀별(최대 2인) 참여 가능

-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
- 단,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

□ (참여자 배제사유)

- ① (중복지원 배제) 정부, 도 및 시·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·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
 - 유사사업 구분 요건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하며, 본 사업 및 해당(중복예상) 사업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야 함
- ② (경북도민)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신청한 자
- ③ (구비서류 미제출)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④ (주소지 미이전) 사업선정 이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(살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)를 해당 시·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자
- ⑤ (사업참여 의지)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 및 학업(학·석·박사)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
- ⑥ (취업자 및 기창업자) 사업선정 이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거나,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
 - 기 취(창)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(폐업)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,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(폐업)해야 한다.
 - * 기 창업자의 경우 기존사업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, 폐업 이후에도 참여 불가능함
- ⑦ (반복참여) 도시청년시골파견제, 청년커플창업지원 등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

창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

- ⑧ (기타) 지병,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,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

<신청자격에 대한 주요 해석>

- ① (유사사업 중복참여자)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, 타 사업과 지원기간(협약기간)이 중복되는 자
-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사사업은 주관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, 고의로 중복참여 여부를 사업 전·후로 밝히지 않은 경우 확인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② (주소지 기준) 주소지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경상북도 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둔 청년이어야 함
- ③ (조건부)
- 취업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참여자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
 - 기창업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참여자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

6. 우대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

☐ 우대사항

- 지역에서 육성·지원하고자 하는 특화지원 또는 6차 산업 관련 분야

연번	시·군	우대분야
1	구미시	금리단길과 연계한 지역 관광콘텐츠 산업

☐ 지원제외 대상업종

연번	분야	대상업종
1	금융·부동산	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중개업 등
2	유흥접객	무도장, 유흥접객업(주점 등)
3	레저	골프장, 스키장, 갬블링, 베팅업 등
4	기타	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

* 기 창업자인 경우, 기존 업종과 중복 및 유사한 업종 제외

* 프랜차이즈 및 개별적으로 개설하는 단순서비스업 제외

7. 신청방법

□ 신청·접수

- (접수기간) 2025. 6. 2.(월) ~ 18.(수) 17: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- 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(gepa02@gepa.kr)
 - *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
 - * 신청서 제출시 e-mail 제목명: [지역정착 신청서]-[신청지역]-[팀명]
- (신청 시·군) 공고문상 시·군별 모집인원을 확인하여,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함
 -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 시·군 모두 신청이 취소됨

□ 신청서류

연번	제출서류명	비고
1	사업신청서 (확인 서명 포함)	• 팀 구성 정보는 구성원 전원 명확히 기재 • 사업명(사업팀명) 기입 시 특수문자 사용금지
2	지역자원조사 계획서 (5매 이내 권장)	※ 신청시 유의사항 • 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(ex, [지역정착 신청서]-[신청지역]-[팀명]) • 신청서류 연번 순으로 제출 •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(5,7번) • 구성원 전원 제출(5~8번) • PDF 파일 제출
3	사업계획 요약서	
4	사업계획서 (5매 이내 권장)	
5	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(기존 이력 전부 포함) ※ 발급처: 국세청 홈텍스	
6	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	
7	주민등록초본 (최근 5년 변동이력 포함)	
8	참여확인서	
9	가점 증빙서류 (해당자에 한함)	

- 1) 필수기재사항: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e-mail
- 2)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, 참여확인서는 직접 프린트해서 서명하여 스캔파일(PDF)로 제출, 주민등록초본 스캔파일(PDF) 제출
- 3) jpg,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, 페이지나누기(모아찍기) 금지,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,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

□ 가점사항

- 공고마감일 기준 가점 대상일 경우 가점 5점 부여(택1)

연번	구분	비고
1	사업계획과 연관된 지식재산권* 보유 *산업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), 저작권 등	
2	참여자(2인)가 부부로 구성된 경우	
3	사전 프로그램(경북 히든 로컬트립) 참여자	

- 사업 신청 시 가점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하며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
8. 선정절차

① 서면심사(적격심사)

-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, 사업계획서 심의(허위, 부실 등) 및 기존 취·창업 여부,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조건 심의

② 대면심사

- PT발표*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,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
 -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및 예비 우선순위 배정
- * 대면심사 대상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
(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, 발표자료는 5장 이내 작성)

③ 최종 선발

- 대면심사,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회 등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사업 참여자 최종 확정 및 선발

④ 협약 체결

-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(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)
 - (주소지 이전)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팀원 모두 주소지를 선정된 시·군으로 이전

9. 지원내용

□ 사업화자금

- 일반운영비, 상품화개발비, 기자재임차료, 공간 임차료,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(시제품 개발)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

* 원자재 등 재료비는 '시제품 개발'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

- (지급방식)사업화 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

* 사업자등록 이후 일반과세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

□ 정착활동비

-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(주택임차료, 식비 등) 및 사업화 활동(사전조사, 교통비, 회의비, 도서비 등)에 필요한 경비

- 최종선발 이후 1차년도 한정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(월 60만원 한도) 내 지급

□ 교육·컨설팅 및 네트워킹

-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

-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*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

* 온·오프라인 집체 교육, 역량강화 교육, 멘토링, 컨설팅, 네트워킹 등

□ 홍보 및 판로지원

-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, 참여자 사업 고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

□ 사후관리

-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,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, 협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

10. 기타 유의사항

- 참여희망 참여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왜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로 점수를 받은 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
- 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팀원 구성 변경은 불가함
-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,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(기타 제재사항은 운영지침 참조)
-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
- 사업 참여자 선정(심사)위원회 구성, 선정결과(점수 포함),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함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,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 공고 예정

11. 문의처

□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**청년정주지원센터**(청년경제지원팀)

- (연락처) 054-995-9946, 476-5367
- (이메일) gepa02@gepa.kr

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선정 대면심사기준

항 목	세 부 항 목	내 용	배점기준	점 수
사업내용 (50)	- 사업목적 이해도	-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?	10	
	- 사업목표 적합성	- 사업내용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?	10	
	- 의지 및 역량	- 구성원(개인별) 지역정주 의지가 있는가? - 구성원(개인별) 역할 및 역량이 충분한가?	20	
	- 사업비 적정성	- 사업비 집행계획이 적절한가?	10	
기여도 (30)	- 경제적 효과	- 제시한 사업계획이 고용, 매출 등 성과 창출 및 가능성이 있는가?	15	
	- 지역사회 기여	- 정주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?	15	
기타 (20)	- 실현가능성 - 확장성	-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? - 향후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?	20	
가점항목		- 지식재산권 5점, 부부구성 5점, 사전프로그램 참여 5점	5	
합 계 (가 점 포 함)			100 (105)	

【별첨 제2호】 사업비 구성 기준

비목	세목	내 용	주의 사항
사업화 자금	일반운영비	사업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,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입비 *공구, 기구, 비품, SW 등 ① 사무용품(필기구 등) ② 비품 수선 ③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* 물품 보관 및 운송료, 운송 포장비, 법인설립비 등 ④ 공공요금 및 제세(우편, 전화요금, 전기가스요금 등) ⑤ 전문가 자문비용 ⑥ 역량강화비(교육수강료, 세미나 참가비 등) ⑦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	-
	상품화개발비	시제품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용 ① 인증획득비, 특허출원비, 지식재산권확보비 등 ② 외주용역비 ③ 소모성 재료구입비 ④ 기술이전비 ⑤ 시험·인증비	-
	기자재임차료	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물품 임차에 필요한 경비	구입불가
	공간 임차료	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	보증금 지원불가
	인테리어비	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	-
	유류비	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보일러 등 냉난방 시설에 필요한 유류비	-
	강연 및 공연개최비	강연 및 공연개최 시 행사진행에 필요한 강연자 및 공연자 사례비용 및 공연개최 비용 일체	-
정착 활동비	홍보 및 마케팅비	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소요비용 ① 홍보영상제작비, 온라인쇼핑몰 입점비,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, 온라인홍보비, 앱(App)스토어 등록비, 카탈로그 제작비, 일간지·신문 등 광고비 ② 전시회 참가비 등	-
	정착활동비 (선지급)	참여팀 정주활동(주택임차료, 식비 등) 및 사업화 활동(지역 자원조사, 교통비, 회의비, 도서비 등)에 필요한 비용 * 1인당 최대 500만원(월 60만원) 한도로 지급, 증빙 후첨부	2년차 해당없음